

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연구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과 위치)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연구 (이하 “연구소” 라 한다)라 하며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안에 둔다.

제2조(목적) 연구소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의 기초와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국제적 첨단 컴퓨터 기술 경쟁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나라가 21세기 IT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의 기본 이론과 응용 기술의 공동 연구 추진
2.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동 연구의 촉진
3.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
4. 기업체 엔지니어의 위탁 및 재교육을 통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기술의 보급
5.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기술 관련 학술발표회, 초청강연회, 연구논문집의 발간
6.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기술 보급과 개발을 위한 표준화 사업 자문 및 참여
7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4조(기구)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연구소장
2. 운영위원회
3. 기획위원회
4. 평가위원회
5. 국제협력위원회
6. 연구부
 - 가. 주관과제 연구부
 - 나. 협동과제 제1연구부
 - 다. 협동과제 제2연구부
7. 교육사업부
8. 연구지원부
9. 대외협력부

제5조(연구소장) ① 연구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은 소프트웨어대학장(이하 “학장”이라 한다)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부) 각 사업부는 연구소 참여교수, 연구소 전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 3~5인으로 구성한다.

1. 연구부는 주관과제 및 협동과제의 실질적인 수행을 맡는다.
2. 교육사업부는 인력지원실 및 교육관리실로 나누고, 각각 전문인력수급과 산업체교육 등을 담당한다.

3. 연구지원부는 연구소의 행정업무 및 공공기기관리를 담당한다.
4. 대외협력부는 국제협력위원회의 세부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그 이외에 산업체와의 컨소시엄 업무, 및 협력업체 기술지원을 담당한다.

제 3 장 연구원

제7조(연구원) ① 연구기관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연구위원 :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.
 2. 상임연구원 :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.
 - 가. 수석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나. 책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다. 선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라. 연구원 : 석사학위이상 소지자
 3. 객원연구원 :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.
 4. 연구원보 :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.
- ②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.
- ③ 제1항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
- ⑤ 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(위촉)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 4 장 운영위원회

제8조(설치 및 구성) ① 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③ 운영위원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.
-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연구기금의 조성, 배정, 관리에 관한 사항
5.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
6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10조(회의)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-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5 장 기획위원회

제11조(기획위원회) ① 연구소의 활동방향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.

- ②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- ③ 기획위원은 소장이 임명하고, 관련기관, 학계전문가, 3개 세부과제 책임자 등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④ 기획위원은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다.

제 6 장 평가위원회

제12조(평가위원회)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.

-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교수 및 대학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겸직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평가위원회는 매 사업 년도의 연구소활동 전반을 평가하여 발전을 도모한다.

제 7 장 국제협력위원회

제13조(국제협력위원회) ① 연구소에는 연구개발의 국제화 산업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를 두며,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평가, 자문, 협력한다.

1. 연차별 연구소 사업결과 평가(국제수준대비 평가)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자문을 받는다.
 2. 국가별 저명학자들을 중심으로 국가간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연구개발의 국제화 및 산업기술 국제 경쟁력 강화를 활성화한다.
- ② 국제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저명한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제 8 장 재 정

제14조(재정)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,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-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.
- ③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5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9 장 사업보고 및 감사

제16조(사업계획 및 보고)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,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감사)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10 장 해 산

제18조(해산) 연구소의 해산은 「부설연구기관설치및운영규정」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.

제 11 장 보 칙

제19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